



〈김 현 변호사의 건설 판례〉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손해

울산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4가합 2454 판결

1. 들어가며

일조권과 조망권은 이미 관련 사례 및 판결 요지 등을 소개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그런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각종 중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그리고 시멘트나 모래, 터파기 공사 등을 당연히 실시하여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분진이 날리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득한 건설현장이라고 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러한 고통을 무조건 감내하여야 하는가?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산업단지 등의 건설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받게 될 스트레스와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현장을 구별하는 막을 설치하고, 가능하다면 주간에 공사를 실시하여야 인근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나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이러한 점을 다루고 있다.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가 우려되고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차치하고라도 당장에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날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실관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기존에 다루어보지 않았던 소음과 진동, 분진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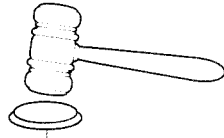
2. 사실관계

A는 B 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폭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 13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B 등의 인근 거주민들은 암반파쇄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그리고 날리는 먼지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공사가 진척되면서 주상복합건물의 외형이 갖추어지면 질 수록 일조량이 줄어들고 조망 이익이 사라지는 등 그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B 등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A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 그리고 사생활 침해 이익 및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소로써 청구하였다.

3. 울산지방법원 판결의 요지

위 사건을 판결한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에게 B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일부 인정하는 판단을



하였다. 인용된 부분은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인데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접토지의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음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

나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정한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이하 '소음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주간(08:00~18:00)의 소음은 70db 이하여야 하고, 브레이커 등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을 위 기준치에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음기준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된다.

다 관할구청이 실시한 소음측정에서 2004. 3. 6. 76db, 2004. 5. 6. 72db, 2004. 5. 10. 73db 및 74db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아 13:00부터 17:00까지 1일 4시간 동안만 공사를 한 2004. 5. 13. 이후로도 2004. 5. 17. 80db, 2004. 7. 12. 76db, 2004. 7. 30. 79db로 작업시간 감소에 따른 +5db의 보정치를 적용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고, A는 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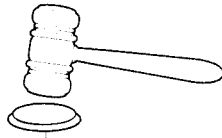
같이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발생으로 인해 관할구청으로부터 조치명령 3회, 소음발생행위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명령 1회,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1회 등 5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1차례 형사고발된 바 있다.

라 위와 같은 소음의 정도와 소음이 지속된 기간, 원고들의 수 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와 관할구청의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이 사건 주상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B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인접토지 거주자의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음, 진동, 분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건설 공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소음, 진동 및 분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음의 경우에 위와 같은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을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진동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준은 이번 사례에서 명확히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 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이와 같이 분진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 역시 소음에 대한 피해가 입증되었다고 하여 자연스레 입증이 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또한 건설공사에서 소음과 분진, 진동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소음 등은 참아야만 한다. 사례에서도 B 등의 주장에 대하여 그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5. 울산지방법원 판결의 의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소음 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주간 소음은 70dB이하이어야 하고, 사전 신고대상 기계 및 장비를 이용할 경우 75dB을 기준 소음으로서 이를 초과할 경우에 수인할 수 없는 소음인 것으로 소음 피해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은 비록 하급심 판례에 의한 판단이라 할 지라도 앞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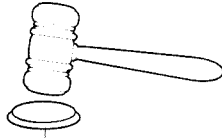
둘째, 입증책임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다. 원칙적으로 민

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지게 된다. 따라서 진동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B 등이 이러한 피해를 담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비디오 영상만으로 B 등이 분진이나 진동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입증책임은 결국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를 설득하는 과정이므로, A의 공사로 인한 분진이나 진동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개연성 있게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전 연탄공장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사 시간 중 빨래를 널어두었는데 빨래가 눈에 띄게 더러워졌다는 등 판사가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6. 사 건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침해 뿐 아니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 분진 역시 공사 현장임을 감안하더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건축주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에 의한 피해를 다른 사례가 적어 소개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사안이 비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독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통 역시 손해배상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례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으로 이러한 침해 이익에 대한 분쟁 역시 계속하여 증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잘 알아 두시고 특히 구체적으로 언급한 소음 피해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여 두시기를 바란다.



Profile

김 현 (金炫) 변호사

- 법무법인 세창 국토해양부 고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행정고시 24회 2차 합격
- 사법시험 25회 합격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미국 코넬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 미국 보글 앤드 게이츠 법률회사 근무
-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 취득

전문분야 : 금융, 회사, 건설, 무역, 해외투자, 지적재산권, 보험, 해상, 항공, 중재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 도로정책심의회 위원
과학기술부 고문변호사
한국철도공사 고문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저서 : 해상법원론 (서울법대 송상현교수 공저: 박영사, 2005)
건설판례 이해하기 (범우사, 2004)

법무법인 세창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99-14 하림빌딩 3/5층
전화 : 595-7121 팩스 : 595-9626, 591-8456
E-mail : hyunkim@sechanglaw.com



2008. 4. 21. 조정환 변호사 영입 및 사무실 이전 기념식에서 포즈를 취한 법무법인 세창의 변호사, 변리사들 (사진제공 : 법무법인 세창)

우리 협회지에 건설관련 판례를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창 소속변호사를 매호마다 선정 소개합니다. 이번호에 소개되는 변호사는 김 서 현 변호사입니다.



김서현 변호사

■ **전문분야** : 형사, 민사 (부동산), 가사

■ 경력

-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2003년 나눔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업
- 2003년~200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국선변호사
- 2006년~현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문재인
- 2007년~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